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감독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, ○구, ○구, ○구, ○○군

내 용

「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지침」 제20조제1항¹⁾의 규정에 따르면
숙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% 이상이 산림경영기
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고, 같은 지침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숲가꾸
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, 작업계획서, 작업원 운영계획서(현장대리인 선
임 및 재직증명,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),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
야 한다.

또한 같은 지침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자와 감리원은
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, 사업시행
자는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
아야 한다.

따라서 감독공무원 등은 동 지침에서 정한 바 대로 숲가꾸기 사업 참여 작
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동일인이 아닌 경우
당초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실행하게 하거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를 승

1) 2015.2.26.이전에는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으로서
전체 작업인원의 60%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숙아베기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었음

인하는 등 숲가꾸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울산광역시 ○구청의 경우에는 ○○동 산00-0번지 풀베기(5ha) 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작업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으며, ○○동 산00-0외 1필지 풀베기(5ha) 사업 등 총 2건 26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참여 작업원 14명 중 1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당초 참여 작업원이 아닌 15명이 변경승인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,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.

울산광역시 ○구청의 경우에는 ○동 산000-0외 66필지 천연림개량(108ha) 사업을 하면서 전체 작업인원(12명) 중 기술자 비율을 58%(7명)하여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도 실제로는 기술자 참여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총 5건 461.06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면서 계약시 제출한 참여 작업원 40명 중 2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당초 참여 작업원이 아닌 131명이 변경승인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,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.

울산광역시 ○구청의 경우에는 ○○동 산000-0외 58필지 숲아베기(148ha) 사업을 하면서 전체 작업인원(9명) 중 기술자 비율을 78%(7명)하여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도 실제로는 기술자 참여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총 4건 366.65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면서 계약시 제출한 참여 작업원 30명 중 5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당초 참여 작업원이 아닌 69명이 변경승인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,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.

울산광역시 ○구청의 경우에는 ○○동 산0-0외 16필지 숲아베기(90ha) 사업을 하면서 전체 작업인원(13명) 중 기술자 비율을 54%(7명)하여 참여자 명단

을 제출하였는데도, 실제로는 기술자 1명(5%)만 사업에 참여하는 등 총 2건 숲아베기 243.4ha 사업의 기술자 참여 비율이 50% 미만이었으며,

또한 ○○동 산00외 115필지 숲아베기(100ha)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전체 작업인원(28명) 중 기술자 비율을 18%(5명)하여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도, 기술자 비율 조정(50% 이상)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.

울산광역시 ○○군의 경우에는 ○○면 ○○리 산00외 176필지 풀베기(101.94ha) 사업 등 총 4건(풀베기 3, 덩굴류제거 1) 262.64ha의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작업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으며, ○○읍 ○○리 산00번지 풀베기(95.81ha) 사업 등 총 22건 1,431.73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면서 계약시 제출한 참여 작업원 213명 중 84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당초 참여 작업원이 아닌 255명이 변경승인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,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○
군수는

[주의] 숲가꾸기 사업 실행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작업원 운영계획서 및 작업원의 사업 참여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·점검하시고,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